

제4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1. 7. 22.(금) 16:15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(1)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1-44-153)

-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제25차 위원회('11.4.25) 보고 후, 입법 예고 및 규제심사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'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기준 및 절차 마련(안 제9조의3, 제9조의4)

- 법률에서 정한 지정심사 항목(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계획, 기술적·재정적 능력, 설비규모의 적정성)의 세부 내용을 규정

※ 본인확인기관 :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(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)을 제공하는 기관

②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정기점검(안 제9조의5)

-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

③ 본인확인업무의 휴지·폐지 절차(안 제9조의6)

-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

④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(안 제9조의7, 별표9)

- 법규 위반내용 및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,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

※ 당초 입법예고안 중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계획의 세부 심사기준과 현장실사의 실시 등은 법 체계를 고려하여 방통위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조정하고,

- 본인확인업무의 휴지·폐지 또는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시 타기관에 업무 위탁·인계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권한을 벗어날 소지가 있어 삭제하며, 법규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조정

(2) 201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- (2011-44-154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69조의2(시청점유율 제한)에 따라 '201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'를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(산정결과)

① (위반여부) 2010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산정한 결과, 방송법 제69조의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30%를 초과한 사업자는 없음

※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 제외(KBS 계열 36.204%)

② (시청점유율 상위 방송사업자) KBS 계열 36.204%, MBC 계열 17.784%, SBS 계열 13.143%, 조선일보 계열 10.148%, CJ 계열 9.718% 등

- 전체 시청점유율 중 상위 10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84% 차지

③ (지상파·非지상파) 채널별 시청점유율을 분석한 결과, 전체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지상파채널이 64.910%, 非지상파채널이 35.090%를 차지

- 지상파 계열 PP(11.132%)까지 포함할 경우 지상파점유율은 76.042% 차지

※ 시청자 개인 일일 평균 시청시간(2010년 시청점유율 조사기준) : 156분

④ (PP 시청점유율)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 공급분야 채널별 시청점유율은 오락(8.690%), 드라마(6.795%), 영화(3.844%), 어린이·만화(3.115%), 보도(2.625%), 스포츠(2.152%), 교양(1.350%), 홈쇼핑(1.123%) 채널 순으로 나타남

※ 방송통신위원회 PP 등록 현황 공급분야 기준으로 재분류

- 주요 MPP 채널별 시청점유율은 CJ계열(8.929%), MBC계열(3.912%), KBS계열(3.718%), SBS계열(3.435%), 티브로드계열(2.779%), C&M 계열(2.066%), YTN계열(1.663%) 순으로 나타남

(3)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- 서울지역 씨엠비 계열 2개사, 씨앤엠 계열 12개사 - (2011-44-155)

○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의거,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신청한 지상파방송(OBS)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유효기간 만료일자를 2013년 2월 18일로 하고 승인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(승인내용)

① 서울지역 씨엠비 계열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

신청 주체 (종합유선방송사업자)	역외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	역외재송신 방송구역
(주)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	OBS (아날로그, 디지털)	서울시 영등포구
(주)씨엠비동서방송	OBS (아날로그, 디지털)	서울시 동대문구

② 서울지역 씨앤엠 계열 1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

신청 주체 (종합유선방송사업자)	역외재송신 대상 지상파방송	역외재송신 방송구역
(주)씨앤엠	OBS (아날로그, 디지털)	서울시 강동구
(주)씨앤엠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	"	서울시 구로구, 금천구
(주)씨앤엠노원케이블티브이	"	서울시 노원구
(주)씨앤엠중랑케이블티브이	"	서울시 중랑구
(주)씨앤엠동서울케이블티브이	"	서울시 성동구, 광진구
(주)씨앤엠마포케이블티브이	"	서울시 마포구
(주)씨앤엠북부케이블티브이	"	서울시 성북구
(주)씨앤엠송파케이블티브이	"	서울시 송파구
(주)씨앤엠용산케이블티브이	"	서울시 용산구
(주)씨앤엠중앙케이블티브이	"	서울시 종로구, 중구
(주)씨앤엠서서울케이블티브이	"	서울시 서대문구
(주)씨앤엠서초케이블티브이	"	서울시 서초구

(4)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 변경 신청에 관한 건 - (2011-44-156)

-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로부터 보고를 받고, (주)매일방송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폐업일을 '11.9.30.에서 '11.12.31.로 변경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되,
 - '(주)매일방송이 조기에 보도PP를 적어도 1개월 이상 앞당겨 폐업하고 종편PP 방송을 개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.'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의결주문에 추가하기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< 승인내용 >

- (주)매일방송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은 (주)매일방송이 승인장 교부 신청시 변경 요청한 폐업 예정일자인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.
- (주)매일방송은 동 폐업일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방송법 제8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3조(폐업 및 휴업 등의 신고)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
 - 2011년 12월 31일 이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(주)매일방송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폐업하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- 권고사항 : (주)매일방송이 조기에 보도PP를 적어도 1개월 이상 앞당겨 폐업하고 종편PP 방송을 개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.

사. 보고사항

(1) 「TEIN 협력센터 설립·운영 계획(안)」에 관한 사항

○ ASEM 정상회의 ('10. 10월)에서 “TEIN 협력센터” 유치가 승인됨에 따라, 同 센터의 설립 및 운영 계획(안)에 대하여 석제범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

○ 주요내용

① 추진배경

- TEIN 및 해당 협력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는 “TEIN 협력센터”를 한국에 설립하여, 국제 공동연구, 시험 검증 및 국제 협력을 강화

※ '10. 10월, ASEM 정상회의에서 TEIN 협력센터의 한국 설립을 공식 승인

< TEIN : Trans-Eurasia Information Network >

·아시아 19개국 및 유럽 34개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국제연구망으로, 이를 통해 인터넷을 활용한 연구 (네트워크, 원격의료, 화상회의 등)를 촉진하는 한편, 개도국의 연구망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: '01. 12월 개통

② 설립·운영 방안

- (법인 등록) 센터 개소 前, 법인을 등록하여 EC 최종계약에 대비

- (조직 인력) 총회(의결기구), 운영위(심의기구), 집행사무국(집행기구)

· 집행사무국 (11~12명) : 사무총장(고위 공무원 선임), 사무국장(민간 전문가 선임), 과장급 공무원 파견(1명), 민간 직원(5명), 산하기관 파견(3~4명)

※ 정부 측 2명의 채용 (휴직) 및 파견 여부는 행안부 등 협의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

- (운영 예산) '12~'15년 한국측 293만€ (51.3억원, '12년 12.8억원) 소요

※ 4년간 총 2,069만€ (한국 293만€, EC 810만€, 개도국 800만€, 비개도국 166만€)이며, 소요 예산은 환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- (장소 선정) 공모 통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선정 (건물 등 확보)

- (주요 사업) TEIN 국제회선의 안정적 구축·운영, 북미·유럽 등 인터넷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, 아시아 개도국 지원사업 수행 등

③ 향후일정

- '11. 8~9 : 법인 등록, 민간 직원 및 지자체 공모·선정 등

- '11. 10 : TEIN 사업계약서 제출, 공무원 파견 행안부 협의 완료
- '11. 12 : EC의 TEIN 사업 승인, TEIN 협력센터 개소

(2) 「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」 전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지역방송대표단체의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」 개정안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
- 주요내용
 - 현행 고시는 3개 부문(사업자단체, 학술단체, 비영리민간단체)별로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법정단체가 아닌 일반단체를 1개씩 지정하고 있으나, 해당 단체가 없어지거나 단체명이 변경되는 경우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
 - ※ 통상의 입법례는 위원 후보 추천단체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지정하거나 단체의 자격기준을 명시
 - 이에 통상의 입법례에 맞추어 지역방송대표단체의 부문별 자격기준만을 규정하고 단체명은 지정하지 않도록 함

아. 기 타

(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. 8. 3(수). 오후 3시30분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8:05)